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11 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김현정·조인철·박홍배

박상혁 · 임오경 · 이건태

전재수 · 이학영 · 서미화

이개호 • 박정현 • 박 정

김동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)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,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,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3조, 제34조, 제35조,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 설).

법률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
- 2. 조정위원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- 3.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

제34조제1항 중 "35명 이내의 위원으로"를 "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"를 "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"를 "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"(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·위촉해제)"를 "(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·위촉해제 및 신분보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"를 "조정위원회 위원장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조정위원회"를 "조정위원회 회의"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회의마다 정한다. 이 경우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,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하며, 그 외 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선임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7조의2(의견진술기회의 부여)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조정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.

- 제3조(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 원회의 구성이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1년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분쟁조정기구) (생 략)	제33조(분쟁조정기구) ①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
	<u>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u>
	1. 금융 관런 분쟁에 대한 조정
	<u>결정</u>
	2. 조정위원회의 의사(議事)에
	<u>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 및</u>
	<u>폐지</u>
	3.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
	<u>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</u>
제34조(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제	제34조(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
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	
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	
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35</u>	<u>6</u>
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
	<u>고려하여</u>
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	2
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	위원 중에서 공무원
<u>서 지명한다</u> .	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.
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	3
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	
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	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 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

1. ~ 6. (생 략) ④ ~ ⑥ (생 략)

제35조<u>(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</u> 철회·위촉해제) (생 략)

<신 설>

제37조(조정위원회의 회의) ① 조 정위원회의 회의는 <u>조정위원회</u>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 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,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<u>조정위원회</u>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 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·위촉해제 및 신분보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 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

② <u>조정위원회 회의</u>-----

하다. <신 설>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선임 은 회의마다 정한다. 이 경우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 한 조정위원,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 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 함되어야 하며, 그 외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선임의 <신 설>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 제37조의2(의견진술기회의 부여) <신 설>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사 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